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3. 7. 18 선고 2022가단284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 고 A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와이케이

담당변호사 이연주

변 론 종 결 2023. 4. 25.

판 결 선 고 2023. 7.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53,053,727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6.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3. 3.경부터 2018. 7.경까지 사실혼 관계에 있으면서 ‘C’라는 상호로 좌대낚시터를 함께 운영하였다.

나. 피고는 2014. 7.경 원고의 D에 대한 6,000만 원의 차용금 채무, 원고의 E에 대한 1,000만 원의 차용금 채무, 원고의 F조합에 대한 1,000만 원의 대출금 채무 합계 8,000만 원의 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위변제액’이라고 한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4. 12. 24. 이 사건 대위변제액에 관하여 준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공증인 G 작성의 증서 2014년 제517호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8,000만 원을, 변제기를 2018. 12. 24.로, 이율을 연 25%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선박강제경매신청을 하였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은 2020. 8. 18. 원고 소유의 선박에 관하여 H로 경매개시결정(이하 위 경매개시결정에 기한 진행된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을 하였고, 피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53,053,727원(이하 ‘이 사건 배당금’이라 한다)을 배당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취지

이 사건 공정증서는 아무런 채권채무관계 없이 작성된 것이고, 설사 피고가 원고의 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의 돈으로 이를 변제한 것에 불과하며, 피고는 문맹인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공정증서에 강제로 서명하게 하였으므로 위 공정증서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 피고는 무효인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배당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이 사건 공정증서는 그 자체가 채권의 존재를 입증하는 처분문서이므로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채무자인 원고가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재된 채권의 부존재 또는 소멸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고, 채권자인 피고가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재된 채권의 발생사실을 다른 증거를 통해 입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원고는 그 주장으로도 8년 이상 좌대업 등의 사업을 하여 40억 원의 수입을 올리는 경제활동을 해왔다는 것으로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이나 채무변제계약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보기 어려운 점,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직전인 2014. 1. 25. 피고에게, 3,500만 원을 갚겠다는 취지의 약정서를 직접 작성하여 교부하였는데 위 약정서에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빌린 돈의 액수, 위 돈의 사용 내역, 앞으로의 변제계획이 자세히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대위변제액이 원고의 특유재산을 사용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달리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이나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아무런 채무를 부담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강요에 따라 허위내용인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이 사건 공정증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이 사건 대위변제액에 관한 준소비대차계약에 기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정증서가 무효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강문희